

「고등교육」 논문심사지침

2017. 11. 02. 제정

2018. 03. 19. 개정

2022. 05. 12.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학술지 「고등교육」 (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심사 기능)

- ① 접수된 논문의 학술지 적합성 평가
- ② 논문 심사자의 선정 및 의뢰
- ③ 최종 게재가능 논문의 편집
- ④ 기타 논문 심사과정의 엄정성 관리

제3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장은 논문 투고 마감일로부터 7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진행은 이메일 등 원격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논문의 심사절차)

-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 가운데 학술지의 발행목적 및 취지의 적합성에 따라 심사대상 논문과 심사제외 논문을 결정한다. 편집위원의 과반수가 본 학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는 선정된 각 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자 3인을 배정한다. 이때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배제하며,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호의 심사자 선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삭제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논문의 심사기준) (개정 2022. 5. 12.)

- ① 연구목적 및 문제의 명료성
- ② 연구방법의 타당성
- ③ 연구내용 및 자료 분석의 충실성
- ④ 연구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 ⑤ 연구의 독창성 및 고등교육에의 기여도

제6조(논문의 심사판정)

① 논문의 심사 판정은 다음의 네 가지로 한다.

- 가. 게재 : 핵심내용과 무관한 일부를 수정하거나 또는 원안을 게재
- 나. 수정 후 게재 : 핵심내용과 관련되는 약간의 문제를 수정 후 게재
- 다. 수정 후 재심 : 핵심내용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를 수정 후 재심사
- 라. 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과 관련된 문제를 수정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

② 논문심사의 판정 방식은 다음에 따른다. (개정 2018. 3. 19.)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판정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재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8. 3. 19.)

나.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 절차를 밟는다. 수정된 내용에 대해 심사자는 “게재” 혹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단, 초심에서 “게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자는 재심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심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 재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로 판정한 원고를 게재 논문으로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2. 5. 12.)

제7조(이의신청) 논문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해당 논문과 이의신청 내용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학술지 편집위원에게 발송하여 과반수 이상의 이의신청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7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최종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기타 논문 심사에 대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